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0.24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0월 24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강희천

### 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 
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4조제2항,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통·반장 위촉자격 연령상한 규정을  
삭제함.

	개정 전	개정 후
통장	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	30세 이상의 주민
반장	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	20세 이상의 주민

- (2) 안 제7조의2에서는 통·반장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 유지 규정을 신설함.
- (3) 기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함.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**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「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」에 따라 통·반장 위촉자격의 연령상한 규정을 삭제하고, 통·반장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,

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